편집위원회 규정

제1장 총 칙

제 1 조

본 위원회는 '대한뇌혈관외과학회 및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 간행위원회'(이하 '편집위원회'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 2 조

편집위원회는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칙 제 20조 의거하여 설치된다.

제 3 조

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[Journal of Cerebrovascular and Endovascular Neurosurgery]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.

- 1) 매년 3월 31일,6월 30일,9월 30일,12월 31일,연 4회 발행한다.
- 2) 논문 접수마감은 학회지 발행 예정일의 3주 이전으로 한다.

제 2 장 구 성

제 4 조

편집위원회는 26 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, 간행(편집)위원장과 부편집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.

제 5 조

편집위원회 위원장(이하 '편집위원장'이라 한다)은 각 학회의 간행 이사가 담당하며,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.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, 출판을 총괄한다.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

편집위원회 위원(이하 '편집위원'이라 한다)은 회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.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장기 해외 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편집위원을 교체하거나 추가 임면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추후 인준을 받을 수 있다.

제 7 조

편집위원회 간사(이하 '편집간사'라 한다)는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 편집간사는 학회지 논문의 심사 및 편집에 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.

제 8 조

편집위원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.

- 1) 신경외과 관련 분야 전공자로서 지명도가 높고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.
- 2) 세부 전공 영역을 Cerebrovascular Neurosurgery, Endovascular Neurosurgery 로 분류하여 각 영역에서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.
- 3) 지역을 각 도별로 분류하여 적정 인원수를 선정한다.

제 3 장 기 능

제 9 조

편집위원회는 학회지 [Journal of Cerebrovascular and Endovascular Neurosurgery]의 체제, 발간 부수,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.

제 10 조

편집위원장은 학회에 접수된 논문의 편집위원을 선정·의뢰하고, 편집위원이 각 논문의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, 의뢰한다. 그리고,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

제 4 장 편집회의

제 11 조

편집회의는 1년에 1회 이상,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고 편집위원장이 소집한다.

제 12 조

편집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

제 13 조

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.

제 14 조

편집위원의 심사는 심사위원 3 인의 심사를 참고하여 심사 총평을 작성하며, 심사 판정을 내린다. 심사위원들의 심사는 Recommendations(심사판정), Evaluation Summary(심사총평), Comments to Author, Additional Comments 로 이루어진다.

제 15 조

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.

- 1) 주제 범위의 적절성 및 연구주제의 창의성
- 2) 연구 방법의 유효성 및 논리전개의 일관성
- 3) 연구 내용 및 결과의 타당성 및 기여도
- 4) 영문 표현의 적절성

제 16 조

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<게재가>, <수정 후 채택>, <수정 후 재심>, <게재불가> 4 등급으로 평가한다. 심사위원 3 인의 판정을 근거로 편집위원이 총평을 한다.

제 17 조

논문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.

- 1) 접수: 논문이 투고되면 자동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메일이 발송되며, 편집사무국(Editorial Office)에서 전체적인 형식, 오타, 윤리 규정 준수 (이중게재, 중복게재, 표절 등 이 없는지 여부)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한다.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한다. Managing Editor의 확인후 학술지 기준을 만족 시 논문이 접수되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 심사 진행 의뢰드리는 메일이 발송된다.
- 2) 심사의뢰: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분야에 따라 편집위원(1명)을 선정한다.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 논문에 대해 전공에 맞는 편집위원을 선정한다. 선정된 편집위원에게는 이메일로 통보된다. 선정된 편집위원은 학술지 투고 시스템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선정하며 이 3명에게 심사위원 선정 메일이 발송된다.
- 3) 논문판정 및 평가사항: '게재가', '수정 후 채택', '수정 후 재심', '게재 불가' 등 네가지 항목 중 한가지로 선택하여 판정한다. 통상적으로 심사자 3 인의 판정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이 선택한다. 단, 편집위원은, 심사자들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상기의 통상적 판정 이외의 판정을 할 수 있으며, 이러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.
- 4) 논문 검토: 이전 심사에서 '수정 후 채택'으로 판정된 경우 편집위원은, 투고자 최종 수정 논문 완성 후, 최종 원고가 적절하게 수정되었는지 확인 검토합니다.
- 5) 재심 심사: 심사위원 2 인 이상이 '수정 후 재심'으로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은 재심을 판정할 수 있다. 단, 논문의 내용이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역시 이같이 판정할 수 있다. 재심은 심사위원 중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을 중심으로 심사되며 위의 심사 과정이 반복된다. 재심으로 심사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은 추가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을 하게 할 수 있다.
- 4) 편집회의: '게재허가'로 판정된 논문들을 수합하여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한다.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. 편집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영문 교정, 형식 교정 및 통계 검증의 작업이 한번 더 진행된다.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추가적인 정보 (예: 참고문헌 제출, IRB No 정보, 등)을 요청할 수 있다. 이런 최종 검증 작업을 마치고 출판이 확정된 논문의 경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.

제 18 조

Review article 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히 요청되며, 예외적으로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게재할 수 있다.

부 칙

제 19 조
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.

제 20조

본 규정은 대한뇌혈관외과학회와 회칙 (1998년 제정, 2013년 개정) 및 간행위원회의 규정(2008년 제정, 2011년 개정)을 승계하며 Journal of Cerebrovascular and Endovascular Neurosurgery의 규정(2012년 1월 제정)으로 승계된다.